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562 제출연월일: 2025. 5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 을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・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・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5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- 1.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사항
- 2.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
- 3.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"를 "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위원

은 「식품위생법」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12조(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제12조(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) ① 식품의약품안전 관한 자문)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 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 ·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 문할 수 있다. 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 책 등에 관한 사항 2.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3.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내 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-----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<삭 제> 용기 · 포장의 표시 · 광고: 「식품위생법」 제57조에 따 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

3. (생략)

3. (현행과 같음)